

建築士를 中心으로한 ‘學校建築設計委員會’ (假稱)의 設置目的 및 그 運營에 關한 一 試案

學校建築의 地域社會化를 試圖

劉 香 山 誠信女子師範大學
教育學科

IV. 同委員會 構成에 따른 活動業務

1. 同委員會 構成 節次

1) 諮問的 法的 構成 組織

同委員會는 前記한 同委員會의 設置目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行 既存法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을 強化하는 同時에 ‘都市計画法’中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반드시 ‘學校用地 造成事業法’ (假稱)을 制定 強化한다는 原則을 갖고 있다. 이러한 原則을 準備하기 위하여 地域別(Urban Rural Community), 學校別(Nursery-Kindergarten, Elementary, Secondary School), 로 나누어 同委員會 委員들은 建築主의 立場과 建築士의 立場에서 各其 既存 該当地域의 各級 學校建築物의 不適性 等の 問題를 調査하여 그 解決點을 法으로 規程化 하므로써 建築主는 그들이 원하는 그 地域社會特性和 그 地域社會를 開發 시키는데 合當한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에 뒷받침이 되는 즉 이것들을 담아주는 用器로서의 技能과 構造 그리고 經濟性을 지닌 建築設計를 생각해낼 수 있고(Idea Sketch), Laymen (非專門家)으로서의 設計를 그려 볼 수 있고(Rough Sketch), 따라서 建築士가 基本設計 및 實施設計를 完成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業務活動으로 보아서 同委員會는 教育 行政組織上 橫的인 諮問組織에 屬하는 委員會인 것이다. 즉 學校建築技術을 質的으로 最大限 活用하도록 이끄는 委員會이기 때문에 비록 그 構成員들이 地域社會人(Laymen)과 學校長, 教師, 더 나아가 學生들의 아이디어까지 間接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委員會라 하더라도 이들은 學校建物の 建築主와 建築士의 關係로서 연결된 絶對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構成員들인 것이다.

2) 運營的 法的 構成 組織

同委員會의 業務活動 (建築主 및 建築士의 活動)을 教育 行政 組織上 뒷받침해주는 縱的인 執行 組織은 教育 行政 組織의 政務官 또는 行政官들이 擔當해야 한다. 즉 地域別로 中央教育 行政 組織인 文敎部에서는 長官 以下 局長을 포함할 것이며 地方教育 行政 組織인 各 市道 委員會에서는 教育監 以下 局長 또는 郡 教育庁에는 庁長 以下 行政官들이 이를 擔當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地域別로의 運營的 組織은 다음과 같은 諮問 組織의 具體的인 活動에 行政過程 一切의 事項을 擔當해야 한다.

(1) 地域別 運營

諮問委員들이 作成한 ‘地域別 學校建築 適否性 調査內容’을 실시키위해 教育 行政 區域別로 調査委員을 動員시키는 일과 이에 필요한 一切의 費用을 負擔하는 일로 나누어서 運營委員의 業務活動을 計劃, 組織 또는 要員 聘請, 活動지시, 보고, 等を 하게 한다.

諮問委員들이 運營委員을 通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地域的 目的은 첫째, 該当地域社會에 있는 初·中等 學校建築物이 地域社會의 特性 및 開發에 맞는 建築物인가, 둘째, 該當 學校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의 特性 및 開發에 맞는 建築物인가. 셋째, 우리나라의 既存 地域區分上 學校建築物 用地는 어떻게 造成되어야 하는가를 가리려는데 있다.

(2) 學校性質別(教育的) 運營

教育 行政은 教育機關을 行政(Administration) 하고 指導 助言(Supervision) 하므로써 個人的이고도 國家的인 人力 開發의 目標을 實現시키고자 하는 目的을 갖고 있다. 따

라서 教育行政 組織은 그 國民에게 해당하는 人口數와 國民의 水準에 向하는 學校建築物을 認可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學校種類는 20種에 達하 이는 學校教育에 맞춘 學校建築物이라야한다. 教育法 81條에서 보듯이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信仰, 性別,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等に 依한 差別없이 그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學校를 設置한다"①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82條에서 보는바와 같이, 學校는 郡·市·서울特別市·釜山市·道 또는 國家가 設立 經營한다" 또한 "學校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 經營할 수 있다"고 明示되었다.

이러한 學校들은 同法 85條에서 보면 "國立學校와 法律에 依하여 設立 義務가 있는 者가 設立하는 學校以外의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 令으로 定하는 設備 編制, 其他 設立基準에 依하여, 私立國民學校, 公·私立의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技術學校와 幼稚園은 當해 教育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公·私立의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 教育大學, 師範大學, 實業高等專門學校 專門學校, 高等技術學校와 特殊學校는 文敎部 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各種學校는 그 程度에 따라 監督 庁이 認可한다. 學校의 廢止, 設立者의 變更 其他 大統領 令으로 定하는 事項도 또한 같다. 教育委員會의 教育 監은 學校의 設立 廢止 其他에 關한 事項을 文敎部 長官에게 報告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同運營委員은 諮問委員의 다음과 같은 目的을 수행을 위해서 行政的 뒷받침을 해야한다.

첫째, 年度別로 地域別 취학연령의 人口數 調査 및 이에 對應하는 各級學校 建築物의 設計作成. 둘째, 變化하는 學校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이 社會에 對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學校建築物의 設計作成 等이다.

時代에 뒤진 學校建物は 地域社會가 크던 작던 間에 當면하는 問題가 된다.

1962年 U. S. Office of Education에서 調査한것을 보면, 30,000의 公立學校建物과 約 250,000個의 教室이(전체의 室에 해당) 50年 以上 使用했음②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建築家에 依하면 "현재 미국 學校建物は 첫째, 구조적으로 둘째, 기능적으로 셋째,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③고 지적하고 있다.

學校建물이 教育프로그램에 더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때는 퇴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학교건물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은 점차적으로 變化 開發되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학교건물의 技能을 地域社會의 또다른 目的에서 建築된 建物에서 行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學校人口數가 증가하고 地價가 高價이기 때문에 學校 行政家들은 낡은 學校建物の 生活을 확장하기 위하여 좀더 넓은 지역사회 空間을 찾고 있다고 한다.④

이제 學校建築은 建築家들에 依해서 단순하고 전통적인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的 觀點에서 同委員會 運營組織은 이에 적극 뒷받침을 할 責任을 가져야 한다.

(3) 技術的 運營

同委員會 組織을 技術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同委員會들을 常任委員으로 두어야 한다. 즉 한 國家의 教育 行政權을 갖는 長官이 教育政策 實現과 연결된 임기를 갖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 수립된 教育政策은 다음에 오는 長官에 의하여 수정 또는 소멸되는 예가 우리나라 역대장관(22번 바뀜)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는데 더욱이 諮問委員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아니면 時間을 낭비시키고 경비를 허비하는 업무활동이 되기 쉽다.

따라서 運營委員은 이러한 諮問委員의 業務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하나의 設計가 후에 나타나는 設計와 연결될 수 있게 諮問委員의 身分을 보장시켜야 한다.

2. 同查員會(諮問委員)의 業務

1) 教育的 스케치(建築主의 스케치)

(1) 아이디어 스케치(Idea Sketch)

諮問委員으로서의 建築主는 學校人 와 地域社會人 을 통한 지역별, 학교별 學校建築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 課程을 제시 시키므로서 여기서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감히 기성세대가 착안하지 못하는 경지에 까지 갈 수 있는 학생 또는 教師들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야 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① 學生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要点

학생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要点들은 첫째 人間의 基本慾求인 生理的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建築物로서 그들은 당연히 給食, 給水, 排水, 便所施設, 난방 냉방 등에 대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것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크기와 규모등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의 욕구를 생각할 것이다. 安全性은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하지 않은 주위와 운동장 등등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속감의 욕구 충족을 생각할 것이다.

나의 물건이 하나라도 학교건물속에 있을 수 있고 보관됐을때 그들은 그 건물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것이다. 요즘 社會에서 문제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소지품이 무겁다는 이야기는 곧 학교 건축물에서 해결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전적 욕구충족을 생각해 낼 것이다.

한 학생이 어느 지역사회의 A 건물을 방문하였을때 房안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空間으로 区分되어 휴식할 수 있고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을 경

註① ㉠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校) ㉡ 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
 ㉢ 教育大學, 師範大學 ㉣ 特殊學校, 幼稚園, 各種學校
 ㉤ 實業高等專門學校, 專門學校

우, 그들은 곧 教室의 改造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욕구 충족이 담긴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人間成長, 發達에 부합되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유치원 원아들은 人間成長, 發達上 상상의 세계속에서 산다.

즉 '나비가 꽃과 말하고' '개가 배고프다고 울고' '책상이 아프다고 말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건물은 반드시 딱딱한 상자식 건물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꽃모양의 건축물 사과모양의 건축물, 정글과 같은 건축물, 등등의 아이디어 설계를 할때 그들은 그러한 건축물을 희망하고 있고, 그속에서 살때에만 그들의 人間成長發達は 더욱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응하는 학교건축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학습능률과 효과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학교건축 설계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하므로써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

② 教師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要点.

이들은 學生을 가르친다(Teaching)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직 그일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學生들에게 어떠한 教授法을 利用하는데 얼마만큼이나 學校建物の 규모와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있다. 예를들어 50~60명의 學生이 있는 教室에서 그들이 教師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음향 장치로서만이 아니고 건축설계 자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教室은 반드시 사각형이라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음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실건축설계를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한다든가, 教師가 서는 위치의 높이와 듣는 學生의 책걸상의 위치가 달라야 한다든가 등등의 많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③ 校長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要点

校長의 學校行政上 역할은 教師들이 學生을 잘 가르치고 學生이 잘 배우는 소위 Total Teaching-learning의 目標를 가장 잘 달성시키게 하는 管理(management)면에서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축설계를 생각할 것이다. 예를들면 校長이 있는 房은 모든 건물의 中央에 位置케 한다든가 또는 모든 건물의 "키"를 복도로 생각하여, 가장 긴밀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적인 설계를 해낼 것이다.

④ 地域社会人에게서 기대하는 아이디어 要点

地域社会人은 同地域의 學校建物を 教育的으로 또는 地域社会目的이나 開發에 必要한 用器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學校建築設計時에 地域 社会化한 건축

註② Lee C. Deighton(ed-in-chief).

The Encyclopedia of Education(8th)(Collins, 1964)(8th),
The Macmillan CO., 1971, p. 82.

물을 설계하게 될 것이다.

(2) 라프 스케치(Rough Sketch)

라프스케치는 앞에서 말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실제로 종이에 대충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草案的인 設計인 것이다. 여기서는 규격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지지 않고 다만 윤곽(Outline)만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앞에서 스케치한 4種을 합하면 Idealistic한 學校建築設計의 라프스케치가 될 것이다.

2) 技術的 스케치(建築士의 스케치)

(1) 基本設計

이제 建築士는 하나의 學校建築設計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알차고 풍부한 기초 자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라프스케치된 학교건축 설계안을 建築士는 一般建築技術에 準하여 細部的으로 設計를 하게되는 것이다.

(2) 實施設計

일단 建築士에 依하여 基本設計가 作成이 됐으면 學校建築 施工時에 다시한번 수정을 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에 수정되고 보완될때 이를 實施設計로 보는 것이다.

3. 教育行政組織과 同委員會의 運營關係

同委員會를 設置함은 반드시 教育行政 組織內에 設置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同委員會 規程(案)을 소개하므로써 中央教育行政組織인 文敎부와 地方教育行政組織인 各市道教育 委員會內에 諮問組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됨을 알 수 있다.

'學校建築設計委員會'(假稱)는 建築士와 建築主 사이에서 相互協助的으로 設計圖를 作成해 내는 作業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한 委員會로서 이는 반드시 學校 設廢 認可權을 가진 教育行政組織속에서 法的으로 橫的(諮問)으로 연결되면서 建築士들이 實施設計를 執行할 수 있는 權限을 최종적으로 갖게되는 委員會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는 委員會인 것이다. 따라서 同委員會를 大統領 令으로 法制化하므로써 그 委員會의 財政的 技術的인 運營上의 法的 보장을 근거로, 委員會의 効力を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同委員會의 規程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學校建築設計委員會(假稱)'規程(案)

第1條(設置目的):

中央은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地方은 各市道教育委員會 教育監의 諮問에 應하여 ① 地域別, 學校別로의 地域社会化한 學校建築設計를 作成하고 이에 必要한 基本的인 教育프로그램 및 教育課程을 改善하는 계기적 設計를 기대하고, ② 現行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의 強化와 現

註③ Ibid.. (Feasibility Study...1967). p. 83.

註④ Ibid.. p. 85.

行 都市計画法上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다 學校用地 造成 事業法(假稱)을 制定 強化하고 ③ 一般建築物과 學校建築物 과의 關係를 強化하며, ④ 學校의 非教育的 事務行政 的 機械化를 試圖하므로서 教師의 公的事務를 제거하는 學校建築設計를 作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組織) :

中央 및 各地方別로 해당 地域에 同委員會를 設置한다.

第3條(細部組織) :

各 地域의 委員會마다, ① 建築主分科 ② 建築士分科 를 두되 前者는 ① 學生分科 ② 教師分科 ③ 校長分科 ④ 地域人分科로 나누고, 後者는 다시 ① 行政 地域分科 ② 學校別 分科로 나누고 後者의 ②는 다시 幼稚園分科 國民學校分科, 中學校分科, 高等學校分科로 나눈다.

第4條(建築主分科) :

建築主分科는 第3條에서 밝힌대로 네개의 分科로 나누 어서 각기 아이디어설계, 라프설계를 한다.

第5條(建築士分科) :

建築士分科는 第3條에서 밝힌대로 다섯개의 分科로 나 누어 基本設計 및 實施設計를 作成한다.

第6條(委員) :

委員構成形式은 第5條에서 나오는 委員을 諮問委員 으 로하고, 教育行政組織의 政務官 및 行政官은 同委員會의 運營委員이 된다.

第7條(運營委員) :

運營委員은 文敎部 長官, 各市道 教育委員會의 教育監 및 이를 担当되는 主務 局長이 된다.

第8條(委員構成) :

各分科委員會마다 委員長1人, 副委員長 2人을 두되 이 는 各委員會에서 互選한다.

단, 運營委員會의 長은 長官 및 教育監이 된다.

各 分科委員長은 當該委員會의 會務를 掌理하며 會議 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고 各 副委員長은 當該 委員長 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9條(議決決定數) :

諮問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各其 委員長, 副委員長 을 포함한 그 定員數(30人 以內)의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 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0條(議決의 効力) :

諮問委員會와 運營委員會의 議決은 同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第11條(報告) :

各 委員長은 當該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中 重要한 事

項은 文敎部 長官 또는 教育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2條(諮門委員 위촉) :

① 各 分科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同委員을 위촉할 수 있 다. 同委員은 各分科委員長의 추천에 依하여 文敎部 長官 또는 教育監이 委囑하고 當該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囑 받은 事項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立案을 하며 當該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3條(幹事 등) :

① 各分科委員會에 幹事와 書記를 두되 文敎部 長官이 나 教育監이 그 所屬 公務員中에서 委囑한다.

② 幹事는 當該 委員長의 命을 받아 庶務에 從事하고 書記는 幹事를 補佐한다.

第14條(手當) :

各分科委員會의 委員에게는 國家의 予算 範圍안에서 手 當과 여비를 支給할 수 있다.

附 則

本會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으로 學校建築設計委員會(假稱)設置하므로서 만이 보 다 時代的 變化와 地域社會開發에 對應하고 더 나아가 國家發展에 기여할수 있는 學校建築을 設計할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建築士와 教育行政家 사이의 協同 作業 이 없어 學校建築이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実感 하고 있으면서도 尙선수법해서 이러한 委員會를 設置하 는데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안타 까울 뿐이다.

이제 다시는 教師의 立場에서, 教室은 建築士가 設計한 대로 利用하면 된다는 퇴폐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집은 내손으로 설계하고 기술적인 것만은 建築士에 게”라는 표어를 부쳐서라도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 각한다.

사실상 教育行政組織에서는 이를 必要로 하고 있다. 다 만 어떻게 始作해야 하는가가 問題인 것이다.

몇몇 이에 뜻을 함께하는 建築士, 校長, 教師, 學生, 地域社會人들이 스스로 자비(自費)로라도 아이디어 스케 치 및 라프 스케치를 수집하여 이것을 한데 모은 기본설 계,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모형 모델 학교건축물을 만들어 보는것이 첫 始作인 것이다.

둘째로 學校設立에 뜻을 둔 設立者가 自身있게 이러한 모델 학교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역사 회에서 인정받고 教育행정기관 더 나아가 國家에서 인정 받을때 이러한 委員會는 設置될 것이다.

끝